

의안번호	2215883
의 퇴 인	고동진 의원
회 답 일	2026.3.20.
추계번호	26B0073
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9조(정년)	제1항에 따른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사업주, 근로자 및 정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사회적 기구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하여 기업 규모, 업종, 산업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정년을 달리 정할 수 있음(제3항 신설)	재량규정
		제3항에 따른 사회적 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4항 신설)	의무규정
2	안 제19조의3(정년연장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) 신설	사업주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퇴직 후 재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과 임금차등 등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연장 조치를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19조(정년)	×	• 미첨부 －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－ 본문 참조
2	안 제19조의3(정년연장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) 신설	—	• 미대상 － 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퇴직 후 재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과 임금차등 등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연장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－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정년과 관련하여 개정조항이 적용될 수 있겠으나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종사자의 정원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사업주, 근로자 및 정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사회적 기구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
 - 개정안은 기업 규모, 업종, 산업군 등 정년 연장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하위 규정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어려우나,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회적 기구의 운영 및 심의와 관련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으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다만,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기구의 규모, 인적 구성,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추계에 필요한 다양한 변수를 합리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